

★ 4월 17일(화) 08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 2012. 4. 16(월)	 <p>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</p>
	홍보담당관실 ☎ 2100-6580

<자료문의> ☎ 2100-6643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담당 : 최민호 사무관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의결

- 학칙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
- 학칙 제·개정시 학생·학부모·교원의 의견수렴 의무화

□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이주호)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하고, 학칙 제·개정 절차에 학생·학부모·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

-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, 지도·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12.3.21. 공포·시행)과 함께,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,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두발·복장,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

- 시행령 제9조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된다.

- 이에 따라,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인 두발·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두발·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- 한편,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·광주·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.

② 학칙 제·개정시, 학생·학부모·교원의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

-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*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미리 학생·학부모·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하였다.

* 영 제9조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

- 이는 현행 시행령*이 학칙 제·개정시 학생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 학교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
*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(2011. 3. 18 개정)

- 교과부는 학칙 제·개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칙 제·개정 과정이 학교공동체의 실질적이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③ 위 프로젝트(Wee* project) 법적 근거 마련

* Wee : We education, emotion


- 시행령 제54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·치유·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교과부는 관련 훈령을 정비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교과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·시행되는 대로 이 같은 사항을 시·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고,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-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,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,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.
-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*하여 '학생자치과'를 신설할 계획이며, 4월 중 「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」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, 학칙과 학생생활협약을 통해 실천적인 인성교육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* 「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」, 4월 중 입법예고 예정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</p> <p>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(1-6호 생략)</p> <p>7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</p> <p>(8-10호 생략)</p> <p>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학생의</u>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	<p>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1-6호 생략)</p> <p>7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 방법, <u>학생의 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</u>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</p> <p>(8-10호 생략)</p> <p>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<u>학생, 학부모, 교원</u>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
<p>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</p> <p>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</p>	<p>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</p> <p>①~③ 생략</p>

<p>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·복지·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,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④ <u>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을 위한 진단·상담·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,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<p>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 최민호 사무관(☎ 02-2100-66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